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080100325

www.kommando.co.kr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08.08.18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04.04

코만도

정 보 공 개 서

「제일식품」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 공개서를 드립니다.

20

제일식품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391번길 13, 2,3층(내동)

전화 : 1599-8332

팩스 : 032-679-0503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032-683-4284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제일식품	코만도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391번길 13, 2,3층(내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23.09.15.	정일영	1599-8332	032-679-0503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526-03-03102	

2.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을 인수함	(주)보배식품	코만도	2023.11.24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391번길 13, 2층(내동)	정승준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코만도라 합니다)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코만도	네덜란드 농부, 인디언 추장 코만도
상 호	코만도 바베큐 OO점 코만도 치킨 OO점	상권, 평수, 메뉴구성등에 따라 코만도 바베큐 및 코만도 치킨으로 가맹점주 선택 가능
상표(서비스표)	코 만 도 (KOMMANDO)	서비스표 등록번호 : 4500052460000
광 고	토탈 숯불 바베큐 치킨과 바베큐를 동시에	
그 밖의 영업표지	 	코만도 바베큐와 코만도 치킨은 디자인 및 메뉴구성의 차이 외 개설비용, 설비내역 등은 차이가 없습니다.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	-	-	-	-	-
2022	-	-	-	-	-	-
2023	-	-	-	1,246,840	-	-

○ 당사는 코만도 가맹사업이 2023.11월 인수하였으며, 당사의 사업자등록일은 2023.9월로 2021, 2022년 동안의 재무현황이 없습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당사는 코만도 가맹사업이 2023.11월 인수하였으며, 당사의 사업자등록일은 2023.9월로 2021, 2022년 동안의 가맹사업현황이 없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정일영	대표	2023.9.15 ~ 현재	제일식품 대표	기업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	2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당사 및 당사의 특수 관계인은 정보공개일 당 가맹사업 외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코 만 도 (KOMMANDO)	해당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2001.01.04 출원 2002.04.25 등록	출원 4520010000052 등록 4500052460000	정승준	2032.04.25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 재산권 내용은 한국 특허정보원 특허 정보검색 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상기 상표권소유자로부터 당 가맹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용권을 득하였습니다.

II. 가맹본부의 코만도 가맹사업 현황

1. 코만도를 시작한 날 : 2003년 5월 20일(가맹점 개점일)

2. 코만도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맛조은	코만도	김종필	2003.05 ~ 2009.06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385-4
(주)엠제이이푸드	코만도	김종필	2009.06 ~ 2015.10	경기도 남양주시 진관로 32-10 (지금동)
보배식품	코만도	이옥이	2015.10 ~ 2017.1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267-1
(주)보배식품	코만도	이옥이	2017.1 ~ 2022.12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391번길 13, 2층(내동)
(주)보배식품	코만도	정승준	2022.12 ~ 2023.11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391번길 13, 2층(내동)
제일식품	코만도	정일영	2023.11 ~ 현재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391번길 13, 2, 3층(내동)

3. 코만도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코만도	치킨	치킨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코만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4	14		14	14		6	6	
서울	10	10		10	10		5	5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3	3		3	3		1	1	
강원									
충북									
충남	1	1		1	1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당사는 코만도 가맹사업이 2023.11월 인수하였으며, 상기 2021, 2022년 동안의 가맹사업 현황은 이전 가맹본부의 사업현황입니다.

5. 최근 3년간 코만도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14	0	0	0	0	14
2022	14	0	0	0	0	14
2023	14	0	0	8	0	6

○ 당사는 코만도 가맹사업이 2023.11월 인수하였으며, 상기 2021, 2022년 동안의 가맹사업 현황은 이전 가맹본부의 사업현황입니다.

6. 코만도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 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 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전년도말 가맹점수	전년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평균 매출액		연간평균매출액(상한)		연간평균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6	-	-	-	-	-	-	-
서울	5	-	-	-	-	-	-	-
부산		-	-	-	-	-	-	-
대구		-	-	-	-	-	-	-
인천		-	-	-	-	-	-	-
광주		-	-	-	-	-	-	-
대전		-	-	-	-	-	-	-
울산		-	-	-	-	-	-	-
세종		-	-	-	-	-	-	-
경기	1	-	-	-	-	-	-	-
강원		-	-	-	-	-	-	-
충북		-	-	-	-	-	-	-
충남		-	-	-	-	-	-	-
전북		-	-	-	-	-	-	-
전남		-	-	-	-	-	-	-
경북		-	-	-	-	-	-	-
경남		-	-	-	-	-	-	-
제주		-	-	-	-	-	-	-

※ 당사는 일부품목이 가맹점에 공급되어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자료가 없어 기재하지 않습니다.

8. 당 가맹사업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당 가맹사업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6	5,324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 당사에서 2023년에 코만도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2023.1~ 2023.12	0	0	0	
광고(판촉포함)	-	연중	0	0	0	

11. 가맹금 예치

○ 당사는 피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주)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제일식품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가맹점사업자의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귀하가 코만도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확정 금액
보증금	해당사항 없음	-	-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7,700				
가입비	5,500	계약 체결일	당사가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가맹금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 반환	계약금 성격의 금전	
교육 및 요리사 파견비	2,200		교육 전 계약해지 시	교육시작 후	

2)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이행보증금, 담보물, 정기지급금(로열티) 등을 받지 않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7,700
가맹비	5,500
교육비	2,2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각각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66,550 ~ 69,850	약3,328~ 약3,493			66㎡ 기준
실내외 인테리어 공사	가맹점사업자 선정 업자	33,000	1,650	계약 또는 물품입고 시	공사/공급 전 계약취소	(3,3㎡ 마다 165만원 추가)
실내 인테리어 소품공사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협력 업체	2,750	약138			66㎡ 기준
간판	가맹점사업자 선정 업자	6,600				전면(LED신형) 돌출,섀딩
행사 및 홍보물품 (비품)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협력 업체	2,200				인건비 와 홍보물품(비품)
주방 집기류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협력 업체	13,200	660			(3,3㎡ 마다 66만원 추가)
최초 공급 상품 비용	가맹본부	4,400 ~ 5,500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가맹점사업자 선정 업자	4,400 ~ 6,600				냉난방기, 도시가스공사 전기승압, 인테리어소품 (필요 시)

○ 인테리어(내장공사)는 당사 시방서에 따라 직접 하실 수 있으며 가맹본부에 감리를 의뢰할 시는 감리비(300만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여야 하며 수도권 이상일 경우 숙식 및 교통비가 추가 됩니다.

○ 주방집기류의 경우 66㎡ 기준 이하는 위의 표에 기재된 내역과 비용이 동일하게 소요됩니다.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 희망자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가맹 희망자가 최종 결정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며 최종 입지가 결정 될 때 까지 별도비용 은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직접 매장을 운영할 당사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아닐 것 건강하며 성실하신 분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건강하고, 성실하며, 밝은 성격	만19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 코만도 신규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는 가맹금은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부담기준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9.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해당없음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측이 배분하여 부담	통지 후 7일 이내	미 시행시 반환	시행	V.9.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로 부담 등	통지 후 7일 이내	미 시행시 반환	시행	V.9.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교육훈련비	해당없음					교육 필요시

						지급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해당없음					
환경개선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협력업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Ⅶ.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협력업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Ⅶ.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자연이자	해당없음					
POS 사용료	해당없음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전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 당사는 일부품목이 가맹점에 공급되어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자료가 없어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을 산정할 수 없어 기재하지 않습니다.

○ 뿐만아니라 당사는 자체 공장 등에서 직접 제조하거나 생산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관계로 정확한 차액가맹금 산정이 불가능하여 기재하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재고관리나 회계처리(혹은 POS)등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를 감독하거나 또는 그로 인한 비용을 수수하는 내역이 없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시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이 유효기간 만료 등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30일 이내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고 개발하는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며, 가맹점사업자의 간판 변경 등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귀하가 운영하는 코만도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당사로부터 승인받은 양수인은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하며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귀하는 당사와 체결한 가맹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가맹계약서 제19조)

①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을은 갑으로부터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은 때로부터(정산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받은 때로부터),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물적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잔존 채무.손해배상액의 통지서를 받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호.상표. 서비스 표. 휘장.간판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며 갑 또는 협력업체의 대여 받은 모든 집기를 반납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갑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에 점포오픈(영업개시) 개점이 안 될시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을이 제1항의 상호 등의 사용중단.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반환도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계약이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에는 을이,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에는 갑이 부담한다.

④ 을이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등은 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반품이 불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갑과 협의할 수 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단위;원)	비고
해당없음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금액	비고
-------	-------	-------	---------	----	----

			내용		
해당없음					2023년 기준

2) 당사가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 수취여부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없음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만도바비큐>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바베큐치킨/소금구이 멧돼지/오리/통삼겹 바베큐 오징어새우 바베큐 바베큐 폭립 후라이드/양념 치킨 윙봉후라이드/핫칠리윙봉 순살파닭/치킨유린기 훈제오리샐러드 외 4종 치즈불닭/튀립불닭발 코만도소시지 외 2종 해물/순살치킨 떡볶이 부대찌개 해물누룽지/해물짬뽕 탕 모듬감자튀김 골뱅이소면 치즈나초 스파게티/새우볶음밥 노가리와 마른안주 황도/과일 오뎅/번데기/계란 탕 주류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단, 과일,채소류 등 당사 또는 협력업체가 공급하지 않는 상품은 가맹점 사업자가 직접 구매 할 수 있다) 직접구매 시 변질 또는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품은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시정 요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계약해지	좌 동 상품은 코만도 바베큐의 메뉴이며 가맹점사업자간 의 공통된 맛의 관리 와 공동이익을 위한 필수요소 입니다.

<코만도 치킨>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바베큐치킨/소금구이 멧돼지/오리/통삼겹 바베큐 오징어새우 바베큐 바베큐 폭립 후라이드/양념 치킨 윙봉후라이드/핫칠리윙봉 순살파닭/치킨유린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단, 과일,채소류 등 당사 또는 협력업체가 공급하지 않는 상품은 가맹점 사업자가 직접 구매 할 수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시정 요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계약해지	좌 동 상품은 코만도 치킨의 메뉴이며 가맹점사업자간 의 공통된 맛의 관리 와

훈제오리샐러드 외 4종	있다) 직접구매 시 변질 또는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품은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공동이익을 위한 필수요소 입니다.
치즈불닭/튀립불닭발			
코만도소시지 외 2종			
해물/순살치킨 떡볶이			
부대찌개			
해물누룽지/해물짬뽕 탕			
모듬감자튀김			
골뱅이소면			
치즈나초			
스파게티/새우볶음밥			
노가리외 마른안주			
황도/과일			
오뎅/번데기/계란 탕			
주류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절차에 의거 물류공급중단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미성년자	각종 주류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 금지	경고 (2회 이상 위반 시 물류중단 또는 계약해지)	고의성 등 정황판단
유사상품 공급업체 및 타 매장	당사에서 공급하는 육, 가공품 및 소스 류	판매 및 대여와 정보제공	손해배상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소비자 가격이 차이를 보임에 따라 협의 후 지역 판매가격을 결정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치킨과 바비큐를 취급하는 호프	코만도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맹점과 가맹점간 거리를 직선거리 500m 단위 1개 가맹점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 별첨이 없을 경우 계약서 상의 영업지역 설정기준에 따름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 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 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 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 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	------	------	----------

일반소매점	보배식품	생닭	일반 매장 납품
-------	------	----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	-%	-%

※ 당사는 매장 POS 등 가맹점의 매출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일부 품목만 납품하여 가맹점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그 비율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판매현황에서 직영점은 없으며 다른 가맹사업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코만도 가맹사업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 코만도 계약기간은 2년이며, 갱신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을이 가맹계약상의 금전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조 1항
- 다른 가맹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을이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20조 1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 설비의 확보나 자격, 면허, 허가의 취득을 못한 경우	20조 1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을 을이 지키지 않은 경우	20조 1항
- 을이 갑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에 위해를 가할 경우	20조 1항
- 을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20조 1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을이 금전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11조 1항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 . 부재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11조 1항
을이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공방법, 종류(메뉴 등), 판매방법, 서비스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운영하는 경우	11조 1항
을이 제5조의 가맹점운영권규정을 위반한 경우	11조 1항
을이 제24조의 물품 등의 공급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사 간에 더 이상 신뢰에 의한 가맹사업거래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	11조 1항
을이 제28조의 비밀유지 의무 등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11조 1항
을이 제29조의 경업금지 의무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11조 1항
을이 제32조의 영업양도 등에서 정한 절차와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11조 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11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11조 2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11조 2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1)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 3)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	11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11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1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	11조 2항

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11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11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11조 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은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해당사항 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또는 통신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수인이 당사교육을 받을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영업팀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신청과 함께 가맹점의 집기, 설비, 시설물, 인테리어 등의 점검을 의뢰하고 교체·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교체·보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가맹점운영권을 대리로 행사하거나 업무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가능 (상속인 사후 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양도절차와 동일	교육수료 및 교육비 납입
대리행사	불가			
업무위탁	불가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코만도]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귀하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나 계약위반 등 귀책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종료 후 1년 간 해당 영업지역 내에서 귀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코만도]와 동종한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치킨과 바비큐를 취급하는 호프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영업팀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당사는 코만도의 영업시간은 제한하지 않지만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오후 15:00 ~ 01:00	월 20일 이상	문의: 영업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무단으로 휴업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당사와 사전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면적에 따라 다름	가맹점 사업자 선택	좌동	

○ 종업원 수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장에 근무해야 하는 지는 가맹점 사업자의 현재 여건과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나며 다릅니다. 왜냐하면 점포평형 또는 형태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 뿐만 아니라 초기투자비(인건비)의 절약 차원과 영업 관리를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챙기고자 할 경우,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다른 업종에 근무하면서 매장을 운영 하실 수도 있습니다.

※ 권장하는 종업원 수

66㎡ 기준, 종업원 수

주방 2명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주방을 볼 경우는 1명)

홀 서빙 2명(아르바이트)

99㎡ ~ 132㎡ 기준, 종업원 수

주방 2명

홀 서빙 3명(아르바이트)

165㎡ ~ 198㎡ 기준, 종업원 수

주방 2명 (아르바이트 피크타임 보조1명 추가)

홀 서빙 3명(아르바이트 피크타임 2명 추가)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별 영업관리	일일판매량을 체크 하여 매출부진 시 원인분석 시정사항 통보 후 결과 토론	1회/월	영업부	점포별 담당직원 배정
재고관리	매장의 판매할 상품수량이 적당한지 체크	1회/월	관리 팀	상동
마케팅관리	신규고객확보 기법을 전수 교육	1회/월	영업부	상동
식자재관리	식자재 관리요령 수시지도	1회/월	본사 교육 팀	상동
서비스 관리	임직원 및 방문고객 의견 청취 후 시정사항이 있을 시 지도	1회/월	영업부	상동
경영관리	매장운영에 필요 한 경영관리	1회/월	임원	좌동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월 1회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점포의 점검은 위생, 영업, 각종설비관리, 원.부자재관리 등의 상태를 점검 합니다.

○ 당사는 첨부한 것과 같은 관리기준을 서면으로 귀하에게 제시해야 하고, 제시 후(14)일 후부터 이 기준에 의거하여 점검하며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당사는 코만도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한 비용분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 50%	광고비 50%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상품광고+가맹점모집광고	광고비 75%	광고비 25%		
	가맹점모집광고	전액	없음		
판촉 전체 행사	통상적인 전체 행사	균등부담	균등부담	판촉 계획 공고 → 가맹점의 참여 → 가맹점부담액 제시 → 판촉 → 사후결과 공고	전체 판촉 행사

○ 전국단위 광고의 가맹점부담액은 가맹점부담액 총금액을 가맹점 매장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사에 통보만 하시면 되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 광고·판촉비용의 소모적인 낭비를 줄이고 다른 가맹점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본부 또는 당사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귀하는 코만도 가맹사업 운영상 제공받은 경영노하우와 영업규정, 기타 이에 준하는 영업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본 계약상의 가맹사업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의 서면동의 없이 메뉴, 영업규정 등 각종 자료를 임의로 인쇄, 복사, 분리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의무는 본 계약의 유지기간은 물론이고 종료 후에도 3년간 유지되며 위 내용을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제37조 손해배상
① 제19조, 제14조, 제35조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이 공급하는 상품 과 정보를 유사상품 공급업체 및 경쟁사 또는 매장에 제공하여 갑 또는 다른 가맹점 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③ 을은 다른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④ 을은 갑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일 내외	70,950 ~ 74,250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즉시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계약서 제공 -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즉시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1일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	
가맹금 예치	- 예치하지 않음(보증증권으로 대체)	계약 후 다음날까지	7,150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3일	업자선정 후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가맹점사업자 직접계약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63,800 ~ 67,100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10~4(4일)	
인테리어 소품	- 영업 개시 전 대금지급	D-8(1일)	별도
가구 및 주방기기 설치	- 물품주문 전 대금지급	D-8(1일)	별도
예비 오픈	- 예행연습	D-3(2일)	
점포 개설	- 오픈행사 및 영업시작	D-day	별도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동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비	해당없음				
판촉장려금	해당없음				

판촉지원	해당없음				
판매용 집기	해당없음				
무상대여					
반품지원	해당없음				
마일리지	해당없음				※차후 진행시 사전협의
CRM	해당없음				
테스터	해당없음				

3. 경영활동 자문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 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 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 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 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 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관리 팀
가맹점사 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 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 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 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 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 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 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가맹관리 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 당사는 코만도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명 또는 내용	신용제공자	금액	신용 형태	신용제공 조건
주류대출	주류회사	최대 5천만원	신용 대출	임원 면담 후 결정

○ 구체적인 신용제공 조건은 귀하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 고
해당없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 당사는 코만도바베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이론 교육	회사 소개,정신 교육 경영 관리	집단 강의	영업 개시 전 4시간	필수 (신규 교육)
	점포운영교육	서비스 메뉴 알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집단 강의	영업 개시 전 3시간	
	요리 교육	이론 및 실습	실습교육	영업 개시 전 2일간	
	오픈 시 교육	예행 연습 및 실전	오픈 매장에서 실질적 교육	영업2일전부터 5일간	
정기 교육		요리교육 마케팅 교육, 기타	이론 및 실습	일정에 따라 사전 서면 통보	필수
특별 교육		영업 부진 시 새로운 경영 노하우 전수	이론교육 (당사 임원 또는 초청 강사)	일정에 따라 조정	선택 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코만도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별도)	비고
신규 교육	8일(오픈 시 교육 포함)	최초가맹금에 포함	최초 계약 시 이수
정기 교육	5시간	-	필수 교육
특별 교육	3시간	상황에 따라 사전 협의	선택 교육

3. 교육·훈련의 주체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 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5조에 따라 영업개시 전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을 개시할 수 없으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정기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5조에 따라 20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1) 신 메뉴 출시 시 요리교육을 안 받으면 신 메뉴판 공급 불가
- (2) 가맹본부가 소비자소개 또는 광고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천 할 수 없다.
- (3) 교육 미비로 인하여 인근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줄시 시정조치
- (4) 정보제공, 교육 자료 및 영업지원을 받을 수 없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	-	-	-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해당없음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만도 가맹점 정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당사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4항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대표자의 이름,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하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점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No.	상호	대표자명	소재지	전 화 번 호
1				
2				
3				
4				
5				
6				
7				
8				
9				
10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자문 확인서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계약체결 14일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동법 시행령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 목록**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 ____년 ____월 ____일 가맹희망자 _____(인 또는 서명)

정보공개서 자문

※ 자문을 받은 경우 정보공개서 제공 7일 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본인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가맹거래사인 ()으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은 날: ____년 ____월 ____일 가맹희망자 _____(인 또는 서명)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계약체결 1일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여야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가맹계약서를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은 날: ____년 ____월 ____일 가맹희망자 _____(인 또는 서명)

비밀유지 약속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공개서와 관련하여 귀사의 영업비밀 및 사업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가맹희망자 _____(인 또는 서명)

■ 가맹희망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폰번호	
주소			
가맹희망지역			